보 도 자 료

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

작성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·산업금융과·금융제도팀,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·은행감독국·제재심의실			
책임자	권대영 과장(2156-9710) 이형주 과장(2156-9750) 손영채 팀장(2156-9680)	담당자	권유이 서기관 (2156-9711) 강성호 사무관 (2156-9724) 김윤희 사무관 (2156-9751) 류성재 사무관 (2156-9683)	
	김영기 국장(3145-8300) 최성일 국장(3145-8020) 김준현 국장(3145-7800)		고일용 부국장 (3145-8001) 권창우 부국장 (3145-8045) 김년담 팀 장 (3145-7821)	
배포일	2014. 9. 16.(화)	배포 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매

제 목: 「금융혁신위원회」 제1차 회의 개최

◆ **"금융혁신위원회"**에서 10월까지 **"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"** 확정

◆ **"직원제재 90% 감축방안"**을 관련법령 개정 前에도 **"즉시 시행"**

◆ 10월부터 **"기술금융 종합상황판"** 가동

◆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, 하반기 중 **"주식시장 발전방안"** 마련

◆ **"금융혁신위원회"** 를 통해 보수적 금융문화를 끝까지 혁신

⇒ 하반기 중 **"매주 현장중심 점검"** 계속

◇ 2014.9.16(화) 07:30, **"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"**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됨

○ **동 위원회**는 **"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**(8.26)"의 **세부방안 마련과 이행점검**을 위해 **외부전문가 9명***으로 구성

* **박영석(서강대, 위원장)**, 이성용(베인&컴퍼니), 김대호(인하대), 심인숙(중앙대), 김성용(성균관대), 정순섭(서울대), 안수현(한국외대), 박창균(중앙대), 장범식(숭실대)

○ 제1차 회의에서는 「**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**」 및 「**제재관행·면책제도 개선방안**」등 **4건의 안건**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

1.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

□ **신제윤 금융위원장**은 회의에 앞서 **오랜기간 누적된 금융관행**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"**실천이 중요함**"을 강조하고 다음을 추진하기로 함

○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**"기술금융 종합상황판"을 10월부터 가동**하겠음

○ 모험자본 육성과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**"주식시장 발전방안"**을 조속히 마련

○ **"현장에 답이 있다"**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, **보수적 금융문화를 끈질기게 혁신**해 나갈 것

2. 회의 주요내용

□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**다음 네 가지 안건에** 대한 **보고 및 활발한 토론**이 있었음

① 「**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**」

② 「**제재관행·면책제도 개선방안**」

③ 「**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**」

④ 「**기술금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**」

⇒ **안건 ①, ②**는 오늘 **회의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해서 발표**하고, **안건 ③, ④**는 **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서 발표**하기로 함

□ **안건의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음**

① "10월까지"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

-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권의 문화를 쇄신할 수 있도록 **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9인**으로 구성

*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며, 3개분과 6개 작업반을 운영 예정

- 혁신위는 금년 **10월까지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**하고, **향후 3년간**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**지속 점검**할 계획

- 특히, **2차 전체회의**(10월중 예정)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 방안*을 심의·확정하고, **이후에는 이행과 실적점검에 주력**할 계획

* 예)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, 은행 내부관행 감독·개선, 매뉴얼 개선방안 등

② "직원제재 90% 감축방안"을 관련법령 개정 前에도 "즉시 시행"

○ 리스크관리·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**제재대상 건수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** 중대한 위법행위 外 **직원제재**는 금융회사에 **"모두 자율위임"**

○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**적법 취급된 대출을 제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**이며 **고의·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**도 **"모두 면책"**

○ 오래된 행위까지 적발·제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당국의 역량을 낭비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**"5년 지난 행위"는 제재하지 않음**

⇒ 오늘 **혁신위에서 제시**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의 「**감독관행 개선 분과위**」 등의 논의를 통해 **구체적인 방안을 마련**할 계획

- '**중과실**' 및 '**제재대상 내규의 범위**' 등에 대한 **판단기준**
  (**단순 내규 위반**에 대한 **제재조치 가능성** 등)
- **준법감시인**에 대한 **적정 권한 부여 및 면책기준 마련**
- **시정명령 등 활용의 구체적 방안**
- **금융회사 KPI**에 대한 **당국 관여의 적정여부** 등

※ 붙임

1. (안건1)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
2. (안건2) 제재·면책제도 개선방안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